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발의자: 남완현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남완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술건설분야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원회가 각 전문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실무 현장에 부합하는 인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 요건을 관련 법령 체계와 실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등 전문적 기술지식이 요구되는 위원회임.
- 한편, 법 제6조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법에 따른 각종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실정임.
 - 또한, 법제처의 타 법령 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구의회 의원’이라는 자격만으로 특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자격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기술자문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빌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구성)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제1호 및 제2호는 법에 규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로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3호의 경우는 법에 “전문가”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조교수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위원 자격의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임.
 - 이와 같은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전문가 자격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7
----------	-----

발의연월일: 2025. 11. .

발의자: 남완현 · 차인영 · 전승관
이성수 · 정선희 의원 (5인)

1. 제안이유

기술건설분야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원회가 각 전문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실무 현장에 부합하는 인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의 자격 요건을 관련 법령 체계와 실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분야 전문가
 - 가. 대학에서 건설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 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부의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u>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u> , <u>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u> , <u>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u> 또는 다른 발주청의 <u>기술자문위원회</u>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분야 전문가 가. 대학에서 건설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기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생 략)
	<삭 제>
	③ (현행과 같음)